

정보통신의 발전과 저작권법적 문제점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1995

문헌: 저작권

권호: 29호 (1995년)

출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55]

I. 머리말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통신망 또는 정보망이 Information infrastructure로 잘 정비되어 감에 따라, 정보통신이 대중화되고 학문이나 사업활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의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본격적인 정보화시대가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그러한 통신망을 통해 공급되고 전달되고 소비될 것이고, 그러한 정보의 상당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과거와 다른 환경 속에 있게 된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능동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도전과 변화를 개괄적으로 보면, 우선 정보통신에 의하여 유통되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적 보호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정보통신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정보형태로서의 각종 데이터베이스(Databases)를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자 또는 부가가치통신사업 제공자의 보호 방안이나 그의 책임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차례대로 생각해 보도록 한다.

II. 정보통신기술과 저작물유통 및 이용방식의 변화

정보통신이 활성화되면 저작물의 유통 및 이용방식도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책이나 음반 또는 그림책 등의 유형물을 구입하여 읽거나 감상하여 왔지만, 정보통신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저작물이 Digital information으로 바뀌어 정보망을 통하여 공급되고, 새로운 저작물의 공표도 정보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소비자들도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감상하거나 자신의 전산기억장치에 저장을 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물이 유통되고 이용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저작물의 출판이 과거에는

[56]

종이책으로 출판될 뿐이었지만 정보통신시대에는 통신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병행되거나 최근의 PC 소설의 경우처럼 통신망에 의한 공급만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개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필요하면 복사기나 녹음기 등으로 복제하여 유형물을 다시 만들어 보관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보통신시대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용이하게 복제되고 LAN을 통하여 유형적인 복사 없이도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개념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개정 저작권법에서 편집저작물로 보호받도록 되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적 보호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라거나 기타의 정보통신 사업자의 보호 방법이라거나 책임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출판권의 개념

특정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동일한 저작물을 종이책뿐만 아니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공급할 수도 있는가,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그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인가? 출판권의 범위는 저작권자와 출판자와의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아니면 단순한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범위의 배타적인 출판권(설정출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반하여 단순한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되면 출판자가 가지는 출판권(허락출판권)의 범위는 출판허락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좌우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해석이 문제로 남는다.

우선, 저작권법에 규정된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로 발행하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등의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로 발행하는 권리"이다.

기계적인 방법에는 인쇄 이외에도 각종 현대적인 방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 이외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출판권의 범위 밖의 행위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하는 복제물 형태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널리 출판이라고 보는 광의의 출판 개념에 따라 출판권의 범위도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정보통신을 예상하지 않고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법 규정의 문리 해석으로도 그러한 광의의 출판 개념은 무리가 있고, 저작권자의 커다란 손실 위에 출판자의 부당한 이익만을 옹호하기 쉬운, 균형 잃은 견해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즉, 문서 또는 도화는 저작물이 유체물에 재현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복제물을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기계장치에 의하여만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는 녹음테이프, 음반,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은 문서 또는 도화

[57]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출판권 개념에 의하면, 저작물을 컴퓨터가 처리하는 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출판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저작권이 출판권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출판계약에 그러한 코드화를 특별히 허락하는 규정이 없는 한 출판권의 범위가 정보통신망에의 입력까지 포함하도록 넓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출판권 개념에 의하면, 저작물을 CD-ROM의 형태로 제작·판매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보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상의 출판권 범위 밖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이러한 논란과 문제는 결국 현행 저작권법이 정보통신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이므로,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출판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와 출판업자와의 이해조정을 위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거나 문화체육부가 출판계약서 등의 내용에 관한 지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복제권의 개념

오늘날의 정보통신은 정보와 자료의 제작·배포 및 이용이 효율화된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커다란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종이로 된 책이나 기존의 아날로그 매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복제기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복제될 수 있고, 복제된 저작물은 원본에 비하여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유통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주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의 대중화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복제권의 의미를 새롭게 구체화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복제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복제의 개념 가운데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저작물로 일시적 또는 고정적 기억장치에 입력하거나 그러한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저작물을 출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복제 개념에 의하면, 정보통신에 다수의 원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획 및 제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의 작업으로서 원저작물을 컴퓨터 등의 전산기억장치에 입력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입력행위가 복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검색하거나 프린트해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도 반드시 저작물이 컴퓨터의 RAM과 같은 일시적 기억장치에 기억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고, 따라서 저작권법상 복제행위가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무런 사용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LAN 등을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통신망 속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58]

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도서관의 경우에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나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의 기능이 정보와 자료의 제공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저작권의 제한으로서 인정된 것인바, 이러한 저작권 제한이 그대로 정보통신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히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도서관이 그 이용자를 위하여, 또는 대학정보센터가 학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이용자 또는 학생과의 사이에 온라인 정보전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존의 종이책으로 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망 속의 정보까지도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특히,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복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여라고 볼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대여라고 보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공중대여권(rental rights)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도서관에 의한 대여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지만, 공중대여권이 도입된다면 도서관의 대여행위는 어떻게 규제될 것인지,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으로서는 소장자료를 단순히 복제하거나 대여해 주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하여 색인을 만들게 되는 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속의 색인을 각색하거나 목차를 변경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 이용자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한 후 당해 특정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도서관은 저작권침해 또는 계약위반의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private use) 또는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하여도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 또는 공정이용 규정은 종이책의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뿐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정보통신망 속의 저작물을 프린트해 내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개인적 전자기억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가 사적 이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될 것이다.

또한,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출력 또는 복제의 유형과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구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보다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특히, Multimedia 또는 복합 저작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물 이용료 기준에 의해서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계산되기도 어렵다는 문제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III.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적 보호

1.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가장 대표적인 정보통신의 하나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s)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형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지난 1994년 1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다수의 원저작물로 구성

[59]

되어 있는 경우에 편집저작물의 무단복제가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그러한 편집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될 수 있

는가, 그리고 편집저작물이 일반적인 공유의 정보(Information in public domain)인 경우에는 편집저작물 자체의 저작권 존재 여부에 관한 회의가 더욱 커진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원저작자와의 관계

정보통신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공급 및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책 수십 권 분량의 정보와 사실 및 저작물 등이 용이하게 복제 또는 개작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신속하고 간이하게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효율적인 절차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다수의 원저작물을 수집하고 편집·배열·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러한 원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용하고자 하는 원저작물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당해 원저작물의 저작자 및 이용조건 등 관련된 정보를 알아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고, 이용료의 산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면 저작물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되어 버린다.

우선, 원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관이 원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공표된 원저작물의 목록과 저작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위 무방식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가 일정한 기관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집·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집중관리(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저작권집중관리가 없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 소재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재에 대하여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기 어렵고, 누가 저작자인가하는 것과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산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우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특허법 등 다수의 산업재산권법의 경우에는 권리설정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작권집중관리(Collective administration)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복합저작물 또는 멀티미디어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및 영상저작물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음악저작권협회와 특정 범주의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집중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범주의 저작물을 모두 총괄하여 집중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은 모든 이용자에게 대한 이용허락 조건이 통일되고 신

[60]

속하고 효율적인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다수의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하게 되고 이용자 또는 경쟁업자들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3의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저작물과 저작물의 관계가 2중·3중으로 생기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있어서 그 소재가

되는 저작물을 이용자가 임의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개작에 대한 이용료의 산정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2중·3중의 원저작물 이용 또는 개작의 경우의 이용료를 통일적으로 산정하여 저작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IV. 정보통신 사업자의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일반화·활성화되면 전산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생기게 되고, CD-ROM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CD-ROM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수의 CD-ROM과 기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공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자의 저작권법적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방송 사업자 또는 유선방송 사업자가 자신의 방송물을 녹음·녹화·복제·방송할 권리라고 하는 저작권접권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자에게도 유사한 저작권접권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하여 방송을 하는 방송 사업자에게 저작권접권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지에서, 유선송신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는 유선송신사업자에게도 유사한 저작권접권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유선송신에 관하여 일본은 그 저작권법 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데이터통신에 대하여 종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접권은 물론 저작권자의 유선송신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종래의 저작권법에는 유선방송권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데이터의 흐름이 일방향형인 CATV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것이 쌍방향형인 데이터통신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보호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새로이 유선송신권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유선송신권에는 종래의 유선방송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의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서비스에는 저작자의 유선송신권이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입법례는 전산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는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자에게 저작권접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 내용의 일부로서 유선송신권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현행 일본의 저작권법하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자 또는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가 원제작업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원데이터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더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가공행위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이차적 저작자로서 보호를 받게 될 뿐이다.
